

##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교수

### I. 역사적 배경

1980 년대의 언론은 구조적인 통제상황에 처해 있기는 했으나 그 이전과는 달라진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으로 언론에 의해 명예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외국의 이론을 활발하게 소개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은 1980년 10월 27일에 제정된 제 5공화국의 새 헌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헌법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언론의 피해보상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 20 조 제 1 항)고 규정한 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이 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조 제 2 항)고 명시하여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정부수립후 제 4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언론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시한 것은 5공 헌법이 처음이었다. 이 헌법의 내용과 뒤이어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정기구로서 발족을 보게 되어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전까지 한국의 언론은 자체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탄압에는 민감하였으나 이에 비해 언론이 개인이나 기업체 또는 특정집단 등에 대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하였다. 이는 언론이 발달 초기부터 국내의 권력과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환경적 요인 때문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에 주로 그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언론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멀리 대한제국 시대인 1898년부터 판례가 있었으며, 1907년에 공포된 「신문지법」(일반적으로는 광무신문지법으로 알려진 법이다.)에도 명문 규정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는 이 신문지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조항을 언론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기까지 하였다.<sup>1)</sup> 그러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타율적인 법적 제재가 아니라 언론계 자체에서 인권보호라는 자각이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언론계는 1957년 4월 7일 제 1회 신문의 날을 제정하면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제 7항에서 「특히 개인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해 1월 11일 언론의 수준향상과 친목을 내걸고 창립된 젊은 언론인들의 단체인 관훈클럽은 창립 직후에 부완혁을 초청하여 「명예훼손문제」에 관한 강연을 가졌으며 이 해 9월에는 「회지」 제 1호에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론계에 소개하였다.<sup>2)</sup>

1961년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립되어 언론의 책임과 이에 따르는 윤리에 대한 개념이 진일보하였고, 언론침해에 의한 피해자가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특히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겪은 직후 신문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강화했을 때에는 일반의 기대도 커졌다. 이를 반영하여 1965년에는 36건에 이르는 많은 제소가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제소건수가 줄어들다가 1978년 이후에는 단 한건의 제소도 없게 되고 말았다. 이는 윤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매우 이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에 있어서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sup>3)</sup>

## II. 언론침해구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언론이 자유의 신장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과 언론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보상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인식이 언론과 정부 및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언론계의 새로운 인식, 민권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추세,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 양양 등의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대로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었다는 역사적인 배경이다. 역사적으로 한국 언론의 발달 초기부터 일제치하에서는 언론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형법과 신문지법에 의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개념은 없거나 희박하였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 후반에야 도입되었다. 1961년 신문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는 언론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제소의 방법이 마련되었으나 사회적인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구제받는 길은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절차와 비용 등 일반인이 언론기관을 상대로 간편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sup>4)</sup> 따라서 법적인 전치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친 끝에 시대적인 필요성에 부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1980년대에는 한국사회가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인권과 명예를 중요시하게 되는 언론환경의 변화라는 시대적 추세였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족 직후에 언론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중재 위원회와 편집인협회를 비롯한 각 언론단체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활발히 열었던 것도 언론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에 열렸던 토론회는 편집인협회가 「사건기사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각사 사회부장 연구토론회 (1981. 5. 7)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사건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간담회(1981. 11. 26~27)를 가졌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1982. 3. 30)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언론중재」(1982. 봄), 「신문과 방송」(1982. 2), 「신문연구」(1982. 여름)등의 언론전문지들도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특집으로 다루어 언론의 자체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토론회들은 1980년대 초의 언론이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묘한 조화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며 보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전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방토론회와 정기세미나 그리고 언론학회, 변호사협회 등과의 연합심포지엄 등을 연례행사로 꾸준히 개최하여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키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80년대초부터 언론의 인권침해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이와 같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문제를 정면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므로 사회문제에 대한 보도경쟁이 치열했고 이에 따른 결과로 언론의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세번째로는 언론침해를 당한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 받겠다는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언론계의 각 분야에서 언론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계몽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게 되었다는 점도 피해자를 크게 고무해 준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중재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인 재판 절차에 따른 판례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언론침해에 대한 판례도 많이 나왔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대법원이 1982년 2월 25일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법정에서의 휴영에는 재판부의 허가와 원고 및 피고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도 언론침해를 막으려는 사법부의 배려라 할 수 있겠다. 또 이미 촬영된 사진이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판단되는 「영상권」에 관한 판결이 1982년 7월 24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것도 이러한 추세의 반영이었고,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권리의식의 신장에 따라 일반국민과 기업체, 연예인 그리고 정치가등이 언론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묵인하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1961년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이 위원회에 제소하여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1970년대에는 신문윤리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 이는 언론을 상대로 병적 절차를 밟아 피해를 보상받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언론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각 언론사와 언론단체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전개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발족 이후에 일어난 언론환경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II. 언론계 내부와 외부의 환경변화

우선 각사별로 심의기구를 설치 하여 언론사 자체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언론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되는 공정보도위원회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sup>5)</sup> 노조가 중심이 되는 공정보도위원회는 주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 민권과 명예훼손에 대한 각 언론사의 인식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언론침해를 구제 받는 것만이 아니고, 기 업 체, 정 당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서 해당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계를 긴장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89년 1월에 파스퇴르유업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원고인 파스퇴르유업 이 중앙 일보에 승소함으로써 기업체가 대언론기업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어 승소함으로써 언론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sup>6)</sup>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정소송으로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은 1989년 3월에 있었던 조선일보 대 평화민주당간에 있었던 상호비난과 고소사태였다.

「조평사태」는 3월초부터 공개적인 싸움이 시작되어 7개월 뒤인 10월 17일에 평민당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조선일보도 11월 9일에 평민당에 대한 맞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 두 사건은 기업체, 언론계, 정제 그리고 일반에게도 공인에 대한 보도와 명예훼손의 한계 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sup>7)</sup>

언론에 의 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구제받는 방법 외에 신문의 광고지면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신문기사를 해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사례도 늘어났다. 광고를 이용한 의견 개진은 1980년 3월 양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현대가 벌였던 전면대결 이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정당, 사회단체, 이익집단 그리고 경쟁기업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중앙일보-파스퇴르 사건과 조선일보-평민당 사건 때에는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권익침해와는 다른 경우지만 의견광고를 정당이나 사회단체 또는 기업체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부 장관들도 대국민 홍보를 위해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1990년 3월에는 불과 2주일 동안에 전 5단으로 된 의견광고가 다섯종류나 각 신문에 실린 일도 있었다.<sup>8)</sup>

해명광고와 의견광고는 광고도 뉴스일 수 있다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었으나, 광고를 내는 한편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방적으로 실어줌으로써 금전에 의한 또 다른 언론침해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남게도 하였다.

한편 재미 한국계 언론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소사건으로 미국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 달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재미 한국계 언론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 연방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1989년 2월 뉴욕 거주 교포 이창신 씨가 한국 당국의 발표문을 전재 보도한 미국내 6개 한국계 신문과 교포 TV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이들 6개 언론기관은 원고에게 각각 1만 5천달러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sup>9)</sup>

#### IV. 늘어나는 중재신청과 호정 판례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이후의 언론상황 변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일반 국민의 언론침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은 중재신청 또는 법원제소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중재신청의 건수는 1988년까지는 1년에 대개 50건 정도에 그쳤으나 1988년부터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1989년에는 121건, 그리고 1990년에는 159건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6·29 선언 이후 신문과 잡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매체의 수적 증가는 일부 언론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었다. 사이버언론이 나타나고 언론침해의 사례도 비례해서 늘어났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간편한 절차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두번째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명예를 회복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90년 10월말에 발간한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에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언론관계판례 46건이 수록되어 있다.<sup>10)</sup>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사례가 28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 배상이 15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3건 등이다. 이는 법원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대해 시대조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해석 범위를 융통성있게 넓혀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언론이 무심코 또는 하나의 관행으로 보도하던 내용도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병정 소송의 경우 판결 이전에 고소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등의 상소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는 명예훼손 또는 피해보상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례를 남기게 되는 일이 1980년대 들어 여러 차례 나타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잡지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잡지가 1980년대에 대량판매를 위한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정착되고 언론침해에 대한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시기에 잡지는 이와 같이 오히려 시대상황을 역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성지와 일간 스포츠 신문들의 명예훼손 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 가운데도 취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고의성 있는 침해사례도 적지 않아서 언론의 새로운 윤리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로는 법원에 제소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79년에는 여성지의 명예훼손에 대해 2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났던 사례까지도 있었다.<sup>11)</sup> 조선일보와 평민당의 고소사건은 법정판결 이전에 쌍방이 취하했지만 평민당은 조선일보에 대해 87억 2천만원의 거액을 요구했던 것도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추세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 V.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

언론중재제도 10년을 평가해 볼 때에 언론중재위원회 발족 이후 언론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과 지난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근본적 민 문제로 우리사회가 중재제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중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표출된 문제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며, 셋째는 중재가 성립된 경우의 정정보도 또는 정식재판에 의한 손해배상이 피해자의 구제에 과연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신문광고와 세미나 등의 여러 방법으로 중재제도의 기능을 홍보하고 이 제도의 활용을 꾸준히 유도해 왔었다. 이에 따라 중재신청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중재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중재제도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현재의 중재제도 자체의 취약점이다. 언론사측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중재가 불성립되는 경우와 언론사측의 회유나 압력에 의해서 신청인이 중도에서 취하하고 마는 경우,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속보 또는 PR 형식의 편법을 사용하는 보도로 무마하여 정정보도청구권제도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에서 마무리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sup>12)</sup>

세째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승소하거나 중재가 성립되어 정정보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판례로는 배상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추세 이기는 하지만 그러 나 언론에 의해 입은 피해를 불과 몇백만원 또는 가장 많은 경우라도 2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중재에 합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원래의 기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극히 작은 크기로 게재하게 되므로 훼손당한 명예나 재산상의 손실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인권보호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과 노력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다 같이 미성년자나 봉육한 부녀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범죄자나 범죄조직을 제보한 사람도 언론이 이를 밝히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거의 무관심하게 미성년자와 봉육한 부녀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단지 혐의만을 두고 수사중인 내용을 언론이 사실인 양 그대로 보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 간 사람을 보도하거나 수사기관이 고의로 확대하여 흘리는 내용을 보도 함으로써 민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언론사의 일선기자와 제작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일로서 적절한 예방대책 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최근의 한 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들이 중재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중재권한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미약하였으며, 중재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불만족이 73.9%에 이르고 있어 피해회복에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의 직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서<sup>13)</sup> 앞으로 언론중재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주

- 1) 정진석, "한국언론의 법·윤리 환경의 변화", 「언론중재」, 1990. 봄, pp.6~14 참조.
- 2) 부완혁, "미국의 명예훼손제도", 「한국신문편집인협회보」, 1957. 8. 13(제 1 호): 박경중, "보도준칙-미국신문의 경우", 「회지」(관훈클럽,1957.8), pp.16~19: 관훈클럽은 5.16 직전인 1961 년 봄호 「신간연구」에도 「신문의 책임」이라는 특집을 마련하고,신문의 윤리문제와 「프라이버시권」을 소개하였다.
- 3) 정진석, "언론침해의 시대별 유형", 「언론중재」, 1982. 가을호, p.60 (32) 참조.
- 4) 민사소송에 의한 첫 판례는 1968 년 미진-이라는 의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경향신문이 15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었다 (정진석, 위 논문 p .61 참조).
- 5) 이에 대 해서는 "언론사 공정보도위원회 현황", 「신문과 방송」, 1989.9, pp.46~52 및 유재천, "언론윤리와 언론사내 자율규제에 대한 고찰", 「언론중재」, 1990. 겨울호, pp.6~14 참조.
- 6) 「언론중재」, 1989, 봄호, pp.158~167: 가을호, pp.167~173: 중앙일보, 1989.3.4, "정간물 등록법 정정보도문 조항 언론자유 침해 위헌심판 청구"
- 7) 이 사건의 상세한 경과와 내용은 「조선일보 70 년사」 제 3 권(조선일보사, 1990), p.5, pp.341~노 1 :기자협회보, 1989.3. 10: 3.17; 3.24 참조.
- 8) 정진석, "지나친 상업성과 직무태만", 「한국논단」, 1990.4, pp.184~ 186.
- 9) 동아일보, 1989. 2. 15, "재미교포 신문방송에 명예훼손 파문"
- 10)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언론중재위원회, 1990.)참조
- 11) 위의 판례집, p.274.
- 12)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체구」(언론중재위원회, 1989.) p.17.

13) 언론중재위원회, 위의 연구 참조.

- 중앙대,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석사, 런던대 정치학박사
- 독서신문편집부장, 기자협회 편집실장, 관훈클럽 사무국장
- 저서 : 「일제하한국언론투쟁사」, 「한국언론사연구」,  
「한국현대언론사론」, 「대한매일신보와 배설」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